

1. 개정이유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방문판매업자, 전화권유판매업자, 다단계판매업자, 후원방문판매업자(이하, 방문판매업자 등)가 폐업을 신고할 때 신고증 또는 등록증 원본(이하, 신고증 등)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분실·훼손한 방문판매업자 등이 폐업을 신고하고자 할 경우 신고증 등을 재발급 받아 제출하여야 하는 불편이 발생하므로 이와 같은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부가가치세법」 및 「전자서명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일부 조항에 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방문판매업자 등의 폐업신고 절차 간소화

- 1) 방문판매업자 등의 폐업신고 시 신고증·등록증 원본을 첨부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
- 2) 아울러,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및 제11호서식을 수정하여 신고증·등록증의 분실·훼손 사유 기재 시 제출의무 같음 안내 문구를 삽입하고 그 사유 기재란을 별도로 마련

나. 타법 개정사항 반영

- 1)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라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서 인용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조항 번호를 수정
- 2)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라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에서
인용하고 있는 용어를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부처 의견조회 예정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13조 후단을 삭제한다.

제15조제2항 후단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방문판매업자등의 휴업·폐업 등의 신고) ① 법 제5조제3항 및 영 제8조제5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영업을 다시 시작하려는 방문판매업자등은 별지 제5호서식의 방문판매업·전화권유판매업의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u>이 경우 폐업을 신고할 때에는 방문판매업 신고증 또는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 원본을 첨부하여야 한다.</u>	제7조(방문판매업자등의 휴업·폐업 등의 신고) ① ----- ----- ----- ----- ----- ----- ----- ----- ----. <u><후단 삭제></u>
②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법 폐업신고서”라 한다)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 -----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 ----- ----- ----- ----- ----- -----.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부가 가치세법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8조(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① 영 제8조제6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신고하려는 방문판매업자들은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암호화 및 전자서명 기술을 사용한 인증시스템을 통한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3조(다단계판매업자 등의 휴업·폐업 등의 신고) 법 제13조제3항, 제29조제3항 및 영 제20조제4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휴업한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하려는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다단계판매업·후

-----.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① -----

--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다단계판매업자 등의 휴업·폐업 등의 신고) -----

-----.

원방문판매업의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u>이 경우 폐업을 신고할 때에는 다단계판매업 등록증 또는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증 원본을 첨부하여야 한다.</u> 제15조(다단계판매원의 등록신청) ① (생략) ② 제1항의 다단계판매원 등록신청서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암호화 및 전자서명 기술을 사용한 인증시스템을 통한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다. ③ (생략)	----- ----- ----- -----, <후단 삭제> 제15조(다단계판매원의 등록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u>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u> ----- ----- ----- -----. ③ (현행과 같음)
---	---

[]방문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

[]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상호			신고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의 성명				
(서명 또는 인)					
신고 항목	기간	부터		까지	
	휴업				
	폐업				
	영업재개				
사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휴업 []폐업 []영업재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위 신고인 대표자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만 적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방문판매업 신고증 또는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 원본(폐업을 신고할 때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 신고증을 분실·훼손한 경우에는 아래 하단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고증 분실·훼손 사유]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신고 수리

신고인

처리기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 의안 소관 부서명 >

특수거래과	
연 락 처	044-200-4438